

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

-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 및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이 1천만 원(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) 이상인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-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3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,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고 납기는 체납액이 가장 큰 건의 납기입니다. 직업(업종)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(업종),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(업종)입니다.
- 명단공개 공고와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강원특별자치도 세정과(☎033-249-2889) 또는 해당 시군 징수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15일

강원특별자치도지사

※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